

#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칙

## 영어영문학과 학생회 회칙

### 제 1장 학생회 회칙의 원칙

- 가.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이하 학생회)는 민주주의적인 회의와 의결 원칙을 준수한다.
- 나. 학생회의 구성 목적은 원활한 과공동체 운영과 학과 행사 운영 원조에 있다.
- 다. 본 시행세칙에 있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의, 경고조치 등 그에 합당한 제재가 주어지게 된다.

### 제 2장 학생회 구성

- 가. 영어영문과 재학생 전원은 학생회 집행부원이 될 자격이 있다.
- 나. 학생회 집행부원은 매 학기 초 모집하며, 당기 회장단에서는 부원 모집 공고를 낼 의무가 있다.
- 다. 별도의 선발 과정 없이 지원하는 자는 자유로이 집행부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가 보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 다음과 같은 자는 배제하는 것으로 한다.
  - 부원 모집 공고에 지원서 제출을 명시했을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은 자
  - 학과 내에서 또는 학내에서 공공연하게 물의를 일으킨 자
- 라. 새내기 학번 대표는 선출과 동시에 학생회 집행부원의 자격을 얻는다.

### 제3장 학생회 집행부원의 정체성과 의무

집행부원은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학과에 대한 애정과 봉사정신에 입각해 학생회에 임한다. 이들은 과공동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 제 4장 학생회 조직

#### 제1 조 세부 조직 구성

- 가. 학생회는 회장단, 교류협력국, 기획운영국, 문화홍보국, 재무회계국, 행정관리국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분담한다.
- 나. 위의 팀 배분과 업무 배당은 학생회 내에서 토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 2 조 세부 직책 구성

- 가. 속기자를 별도의 직책으로 두어 업무 진행의 책임성을 기한다. 속기자는 학생회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문건으로 남기는 일을 한다.
- 나. 재무회계국장은 학생회 회비 통장의 관리를 맡으며 자금 사용의 제반을 관할한다. 또한 투명한 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회계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제 5장 학생회 회의록

- 가. 학생회 회의록(이하 회의록) 작성은 속기자가 담당한다.

나. 회의록의 작성 목적은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원을 비롯해 모든 영어영문과 소속생과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논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다. 회의록은 가능하면 문서파일로 만들어 학생회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어영문학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첨부, 게재한다.

## 제 6장 학생회 회계 내역

가. 학생회 회계 내역(이하 회계 내역)은 재무회계국장이 담당한다.

나. 해당 학기 회계 내역은 해당 학기 종강총회에서 결산 보고를 한다.

## 제 7장 학생회 회의

가. 학생회 회의는 매주 지정된 요일에 진행해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으로 지정된 시험기간 전의 일주일과 시험이 진행되는 주는 예외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에 학과의 중차대한 사안으로 부득이하게 학생회 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는 사전에 영어영문학과 온라인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에라도 그 사유의 타당함을 밝혀야 한다.

나. 학생회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학생회 회의 안건과 일정은 회의 사전에 커뮤니티에 공시해야 한다.

다. 학생회 회의를 회장단의 권위나 학생회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무단으로 2주 이상 개최하지 않을 시에, 영어영문과 소속생은 정당하게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 8장 학생회 관련 기타 기록

회의록, 회계 내역과 더불어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기록물을 남기고, 보존해 전수한다.

가. 당기 회장단과 학생회 명단 및 조직 구성

나. 학과 행사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기획, 보고, 결과 문건

다. 학과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 동영상 자료

## 제 9장 기록물 저장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학생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다. 또한 항목별로 정리해 차기 주자들이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단, 금일(2012년 03월 14일) 세칙 인준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금번 학생회에서 분류해 보존된 자료의 가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 제 10장 학생총회

학생총회는 회장단 및 학생회 운영에 대해 영어영문과 소속생 전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일시적인 소집이다. 이에 관한 세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학생총회는 5인 이상의 소속생의 발의로 개최될 수 있다.

나. 요건에 합당한 발의가 있을 시, 영어영문학과 회장은 이들의 개최를 인허하고 학생총회의 주재를 맡는다.

나. 발의자는 소집 최소 일주일 이전에 안건 제의에 관한 문건을 영어영문학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다.

다. 안건 상정과 의결, 인준 등 효력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는 50인 이상의 소속생이 학생총회에 소집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라. 학생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회장단과 학생회는 물론 영어영문학과 재적생은 모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제11장 영어영문학과방(이하 과방) 관리 권한

과방은 과 규모 특성상 2개로 운영되며 이는 영어영문학과 학생 외 어느 누구도 제약할 수 없는 순수 자치 공간이다. 과방에 대한 관리는 학생회에서 전담한다.

## 제 12장 학년별 대표제도 <2023.03.07. 개정> <2026.03.13. 개정 및 신설>

학년별 대표는 각 학년을 대표하는 3인으로 하며, 그 세부 사항은 이하에서 규정한다.

### 제1조 (정의)

가. “새내기”란 본회 회원 중 해당 연도에 재적생 명단상 이수학기가 0학기 혹은 1학기인 학부생을 뜻한다.

나. 새내기 학년대표단 (이하 ‘기대표단’)은 본회의 새내기 학년들을 대표한다.

### 제2조 (구성)

가. 기대표단은 기대표 1인, 부기대표 2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대표단은 나이 및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등한 지위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 제3조 (권한 및 책임)

가. 기대표단은 임기 기간 내 해당 학생회장단의 대리인으로서 국제캠퍼스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조력과 친목 도모 등의 활동 전반을 담당한다.

나. 선출과 동시에 졸업 시점까지 연락망을 확보하여 진급 이후의 학과 행사 참여 및 학년별 친목을 도모한다.

다. 기대표는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진다.

라. 기대표는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의 대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마. 기대표단은 본회 집행부와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으며, 집행부원과 겸임 할 수 있다.

### 제4조 (선출 및 후보추천)

가. 기대표단은 개강총회에서 새내기 과반의 참석과 과반의 찬성을 조건으로 하여 다수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보가 기대표 1인, 부기대표 2인 일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하에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나. 기대표 및 부기대표 후보자들은 개강총회 새내기 참석자 중 자원 및 추천 또는 사전에 학생회장단에 의해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 양식을 통해 확정된다.

다. 개강총회에 참석한 모든이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며, 유권자는 후보자 중 기대표 1인 부기대표 2인에게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개강총회가 무산 될 경우, 기대표단 후보자는 비대면으로 자원자를 받아 확정한다. 이후 해당 연도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기대표 1인, 부기대표 2인을 선출한다.

#### 제5조 (임기)

가. 기대표단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1학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진급으로 인하여 새내기대표단으로서의 공식 임기는 종료되나, 제3조(권한 및 책임)의 취지에 따라 학과의 단합과 공동체의 연속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한다.

### 제13장 회칙 <본장 신설 2022.09.02>

#### 제1조 (회칙 개정안의 상정)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

- 가.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단이 발의한 경우
- 나. 영어영문학과 학생회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 다. 본회 재학생 회원 1/10 이상의 연서를 통해서 발의한 경우

#### 제2조 (회칙개정안의 공고)

회칙개정안이 발의되면 학생총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 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가.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다.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제3조 (회칙 개정안의 의결)

재학생 회원 1/10 이상의 참여와 참여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제4조 (공포)

개정 기준을 충족하여 본회의 회칙이 개정된 경우,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제5조 (효력)

개정된 회칙은 학생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